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39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8.

발 의 자:최은석·권성동·김종양

박충권 • 이인선 • 김성원

고동진 · 강대식 · 정동만

박성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를 결정하 도록 되어 있어, 해외투자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에 처한 상황임. 이는 사업개발 초기부터 출자가 이루어 져야 수주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작 용하고 있으며,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.

또한, 최근 성장하는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,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투자조합 등 여러 형태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. 그러나 현재 수출입은행의 투자 범위는 제한적이어서,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춘 유연한 지원이 어려 운 상황임. 이에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,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2 제2항 및 제3항). 법률 제 호
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2항 중 "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"을 "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"으로, "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"을 "출자할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집합투자기구에"를 "집합투자기구, 「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벤처투자조합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2(법인에 대한 출자 등)	제20조의2(법인에 대한 출자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수출입은행은 <u>제18조제1항</u>	② <u>제18조제1항에</u>
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	<u>따른 자금공급</u>
<u>증</u> 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	
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	
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	<u>출자할</u>
에 따라 <u>그 대출이나 보증과</u>	
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다.	
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	③
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	
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	
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「자	
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	
법률」 제9조제18항에 따른 <u>집</u>	<u>집</u>
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.	합투자기구, 「벤처투자촉진에
	관한 법률」에 따른 벤처투자
	조합,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
	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